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3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수정이유

위탁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위탁기간과 보조금액 및 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위탁기간을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
 위·수탁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
 ⇒ 위·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○년○월○일부터 ○년○월○일로
 함.
- 보조금액을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
 보조금은 연간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
 ⇒ 보조금은 연간 ○○○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함.
- 이행보증금을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수정
 보증금액은 매 회계연도 총지원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20%를
 ⇒ 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의 20%로 하고, 총보조금이
 연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.

3. 첨부자료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2. 주요골자의 위탁관리 기간중 “2001. 3. 1~2003.12.31(2년10개월)” 을 “3년으로 하되 위탁개시일부터 ○년○월○일로 한다. 단,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- 2. 주요골자의 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“소요경비와 운영 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”
- 2. 주요골자의 협약의 보증증 “보조금 총액의 20% 이행보증금 예치”를 “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액의 20%로 하되 연간 총보조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 예치”로 한다.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위·수탁협약서(안) 제3조제1항중 “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를 “3년으로 하되 ○년○월○일부터 ○년○월○일로 한다. 단, “갑”의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위·수탁협약서(안) 제10조제2항중 “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. ※추후 수탁자 결정시 보조금액이 확정되므로 변동 가능함”을 “○○○원으로 한다”로 한다.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 위·수탁협약서(안) 제21조제2항중 “보증금액은 “갑”이 교부 결정한 매 회계연도 총지원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20%로 한다”를 “이행보증금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하는 연간 총보조금의 20%로 한다. 단, 총보조금이 연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2. 주요골자</p> <p>○ 위탁관리 기간 <u>2001. 3. 1~2003.12.31(2년 10개월)</u></p> <p>○ 보조금 지원</p> <p>가. <u>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</u></p> <p>나. <u>보조금은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</u></p> <p>※ <u>추후 수탁자 결정시 보조금액이 확정되므로 변동 가능</u></p> <p>○ 협약의 보증</p> <p>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<u>보조금 총액의 20% 이행보증금 예치</u></p>	<p>2. 주요골자</p> <p>○ 위탁관리 기간 <u>3년으로 하되 위탁개시일부터 ○년 ○월 ○일로 한다. 단,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</u></p> <p>○ 보조금 지원</p> <p><u>소요경비와 운영수입금을 감안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</u></p> <p>나. (삭제)</p> <p>※ (삭제)</p> <p>○ 협약의 보증</p> <p><u>----- 이행보증금은 연간 총보조금액의 20%로 하되 연간 총보조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 2천만원을 예치</u></p>
<p>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위·수탁협약서(안) 제3조(위·수탁기간) ①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기간은 <u>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충청북도자연학습원사무의위·수탁협약서(안) 제3조(위·수탁기간) ① ----- <u>----- 3년으로 하되 ○년 ○월 ○일부터 ○년 ○월 ○일로 한다. 단, “갑”의 회계연도를 감안하여 3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수 정 안
<p>제10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<u>2억3천만원</u>에서 <u>2억5천만원까지</u> <u>보조금으로 지원한다.</u></p> <p>※<u>추후 수탁자 결정시 보조금액이 확정되므로 변동 가능함</u></p>	<p>제10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○○○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※ (삭제)</p>
<p>제21조(협약의 보증)① (생략)</p> <p>② <u>보증금액은 “갑”이 교부 결정한 매회계연도 총지원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은 20%로 한다.</u></p>	<p>제21조(협약의 보증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이행보증금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원하는 연간 총보조금의 20%로 한다. 단, 총보조금이 연간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</u></p>